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무역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형평이 맞도록 취득세의 면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 이렇게 대외무역업자에게 취득세 면제혜택을 줄 경우 중고차량 등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수출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출용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차량이 수출되지 아니하고 타용도로 사용될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장치가 요구됨.
- 3) 기타 안 제14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의 제3항, 제23조의2(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1항 등에서 적시된 조문 및 용어 등의 내용은 변경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 등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차차법규정비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중 “4,500원”을 “4,800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5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5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후단중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9조의2”를 “제2조 및 제4조”로 하고, “호주승계예정자”를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자”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2호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10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9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단서 및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은 당해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6(중고수출자동차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 토 의 건

1. 개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표창과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제정(92.1.15) 운

<p>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상 관련부문을 모두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환경상과 중복되는 환경보호부문을 삭제하며, 기타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li> </ul> <p>2. 주요개정내용 및 검토사항</p> <p>1) 자랑스러운공무원상 관련부문 등의 삭제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조례는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하여도 청렴근검, 친절봉사, 시정발전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연간 200명 범위내에서 표창하고 매월 5만원씩 1년간 6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왔음.</li> <li>&lt;공무원 시상내역('92-'98년)&gt;</li> <li>-수상인원 : 1,353명(연간 193명)</li> <li>-수당지급액 : 8억 12백만원(연간 1억 16백만원)</li> <li>○ 공무원 관련 표창은 196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공무원표창조례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데, 시상내용중 특히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새서울봉사상」은 성실하게 일하는 부서와 직원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자랑스러운공무원상에서 수여해 온 것보다 그 규모와 포상 내용면에서 보다 나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li> <li>&lt;새서울봉사상 시상계획&gt;</li> <li>-우수부서표창 : 연간 12개부서, 부서당 100만원씩</li> <li>-공무원표창 : 연간 540명, 1인당 50만원씩</li> <li>○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랑스러운공무원상 부문은 현행 공무원표창조례와 표창 및 시상금에서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li> </ul> <p>2) 자랑스러운시민상중 환경보호부문의 삭제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랑스러운시민상은 지역사회발전, 시민화합,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근검절약, 환경보호 등 6개 부문에 대하여 연간 총 50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상해 왔음.</li> <li>&lt;시민상 시상내역('92-'98년)&gt;</li> <li>-총인원 : 1,141명(연간 163명)</li> <li>-시상금 : 11억 41백만원(연간 1억 63백만원)</li> <li>○ 현재의 6개부문중 환경보호부문은 '95년</li> </ul>	<p>하반기부터 '98년 하반기까지 총 67명에게 시상하였으나, 지난 '97년 1월 15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에 의거 별도로 환경분야의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자랑스러운시민상과 사실상 중복되어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p> <p>3) 기타 개정사항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개정된 부분을 보면 안 제11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시장표창이상의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수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임.</li> <li>○ 이는 기간은 비록 3년이 되지 않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적자의 사기를 더욱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li> </ul> <p>3. 결 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현행 조례중 서울특별시공무원표창조례와 중복되는 공무원상 관련부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환경상과 중복되는 시민상중 환경보호부문에 대하여, 기타 표창수여기간 제한부문에 대하여 각각 삭제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li> <li>○ 다만, 시민상 수상자의 수상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는 즉시 취소하고 지급된 물건이나 금전을 치탈하는 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li> <li>○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의 종류를 보면 자랑스러운시민상을 비롯하여 문화상, 어린이 및 청소년상, 시민대상, 환경상, 건축상 등이 각각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바, 장기적으로는 조례정비차원에서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li> </ul>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 <p style="text-align: center;">검 토 의 견</p> <p>1. 개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례는 지난 94년 10월 25일 한양천도 600년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28일을 서울시민의 날로 정하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울시민으로서의 긍지와 희망을 갖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자 제정된 조례로서,</li> </ul>
---	---